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8. 23 선고 2023가단868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부천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

변 론 종 결 2023. 7. 19.

판 결 선 고 2023. 8. 23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. 1. 23. 접수 제096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부천시 C 대 4,30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.) 지상의 D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는 지하 4층, 지상 14층, 227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데, E시장재건축조합(이하 ‘이 사건 조합’이라고 한다.)은 2006. 12. 8.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F호(이하 ‘F호’라고 한다.)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G조합은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카합1171호)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7. 1. 22. F호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, 이에 기하여 2007. 1. 23.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.

다. H은 2008. 5. 9.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호 중 126.84 / 3061.04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(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단2036호)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.

라. 그 후 F호는 2009. 6. 19. F호부터 I호까지로 구분되었고(그 중 I호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. 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.), 앞서 본 가처분등기 및 압류등기 내용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다.

마. H은 2009. 8. 18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. 10. 2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이어 원고가 2016. 12. 1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. 11. 1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 내지 갑 제1 내지 4호증(가시번호 포함), 을 제1, 2호증(가시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 주장 요지

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조합소유 구분건물별로 분별되어야 하므로, 전소유자인 H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방세 533,440원 전액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, 피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징수한 797,637,390원을 납기가 빠른 지방세부터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체납액은 전액 징수되었는바,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국세채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, 그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(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7다2138 판결 등 참조),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납액이 모두 납부되거나 징수되었다는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 그 밖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·입증이 없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조은아

별 지 목 록

1동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[도로명 주소 : 부천시

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4층 공동주택 및 판매, 근린시설

대지권인 토지의 표시

1. 경기도 부천시 대4308㎡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 84.56㎡

대지권의 표시

1. 소유권대지권 347871분의1605.2293



